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25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윤재옥 • 이인선 • 김 건

김기웅 · 김태호 · 최수진

이종배 · 엄태영 · 백종헌

이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 요청·자진회수 명령, 미이행시 매각 •폐기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런데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강제처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등).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을 "제34조의2제2항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
| 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 |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 | | |
| 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 | |
|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 | |
| 제1호, 제5호, 제8호(<u>제34조의2</u> | 제34조의2제 | |
|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 <u> 2항의</u> | |
|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 | | |
|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 | | |
| 을 말소하여야 한다. | |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
| ② ~ ⑪ (생 략) | ② ~ ① (현행과 같음) | |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 | |
| 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 | 고 등의 의무) ① | |
| 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 | |
| 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 | | |
| 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 | |
|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 | |
|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 | | |
| 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 | |
|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u> | <u>시장</u> | |
| <u>장·군수 또는 구청장</u> 에게 신 | <u>・군수・구청장</u> | |

고를 하여야 한다.

- ②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 , | |
|---------------------|----------|
| ②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
| | |
| | |
|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 양도 |
| ·양수 등의 신고) ① | ~ ③ |
| (현행과 같음) | |
| 4 | |
| | |
| | <u>시</u> |
| <u>장 • 군수 • 구청장</u> | |
| ⑤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 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①(생략)
 -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u>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1. ·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 ⑥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 |
| | |
| | |
|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 메메 |
| 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 등의 |
| 의무) ① (현행과 같음) | |
| ② | |
| | |
| 시장·균 | <u> 구수 •</u> |
| <u> 구청장</u> | |
| 1.·2. (현행과 같음) | |
| 3·④ (현행과 같음) | |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 1 - |
| 11기 그스 그리기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 다.

② ~ ⑤ (생 략)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 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 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 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u>시장·군수</u>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 |
| 소·정지)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
|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 |
| 성검사) |
| |
| <u>시장·군수·구</u> |
| <u>청장</u> |
| <u>.</u> |
|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
| |

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장·군수</u>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 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 다.

| <u>시장·군수·</u> |
|---------------------|
| <u> 구청장</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
|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 |
| |
| |
| |
| |
| |
| <u>.</u> |
|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 |
| |
| |
| <u>.</u> |

-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의 부담으로하되,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하고, 충당하고도남은금액이 있을 때에는그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

| ③ <u>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
| |
| |
| |
| <u>시장·군수·</u> |
| <u>구청장은</u> |
| |
| |
| |
| |
| 4 |
| |
| |
| |
| <u>\lambda</u> |
| <u>장·군수·구청장은</u> |
| |
| |
| |
| |
| |
| |
| |

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u> <u>군수 또는 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 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 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시장·군수</u> <u>또는 구청장</u>은 건설기계사업자

| ⑤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 |
|-------------------------|
|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 |
| 외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
|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
| 폐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 |
| 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
| <u>시장·</u> |
| <u> 군수 · 구청장</u>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 |
| 한 행정처분) ① <u>시장·군수·</u> |
| <u> 구청장</u>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③ (생략)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u>시장·군수 또는 구</u>
<u>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②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u>.</u> |
|---------------------------------------|
| 1. ~ 5.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36조(청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4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u>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4 | | |
|----------|-------|---------------|
| | | |
| | | |
| | | - <u>시장·군</u> |
| <u>수</u> | • 구청장 | |